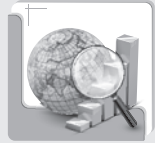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법령질의



자문비 등 수당지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Q

저희 회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자문회의 및 직원교육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본인확인 및 계좌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있으며, 당연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사본상 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리스트를 시스템에서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면 신분증 사본도 제출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등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검토사항

- 2014.8.7.부터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 24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 자문비와 같은 수당 지급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나아가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 법률은 현행과 달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수당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향후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 답변내용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고유식별정보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까지 DB매칭키 등으로 남용될 뿐 아니라, 관리도 소홀하여 유출도 매우 잦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도 속출
 - 이에 2013.8.6. 공포되어 2014.8.7.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함

- 물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및 관련 서식 등은 원천징수 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활동수당 지급시 이를 근거로 주민번호 처리를 할 수 있다.

-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정보를 처리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목적달성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 등에 의거하여 해당 서류 또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
 - 동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법령상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굳이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수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2014.8.7. 이후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및 강사료 등 수당지급을 위해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신분증 등 첨부서류 수집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령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014.8.7.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④ (생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014.8.7.시행)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